

**CERTIFICATE AS TO ARTICLES OF INCORPORATION**

I, Kim, Sung Hwan, Representative Director and Chief Executive Officer of Korea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 (the "Company"), do hereby certify that attached hereto is a true, complete and correct copy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in full force and effect on the date hereof.

IN WITNESS WHEREOF, I have hereunto set my hand this 23th day of June 2025.

KOREA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

By: \_\_\_\_\_

Kim, Sung Hwan  
Representative Director and  
Chief Executive Officer



# 한국투자증권

## 정관

			제정	1974.08.06
개정	2007.05.23	개정	1996.05.31	개정
			1997.10.14	1975.02.25
	2008.11.14		1998.06.03	1975.05.07
	2009.05.28		1999.06.18	1975.10.08
	2010.05.27		1999.07.12	1976.04.01
	2011.05.26		1999.12.09	1976.07.12
	2012.06.07		2000.05.25	1977.03.15
	2014.03.20		2001.06.12	1977.07.25
	2016.05.16		2002.05.28	1978.12.04
	2017.03.23		2003.06.03	1980.02.14
	2019.03.21		2004.06.08	1981.02.14
	2020.03.19		2005.04.06	1982.02.15
	2022.03.24		2005.05.19	1984.09.01
	2025.03.27		2005.06.01	1990.05.30
			2005.06.28	1992.06.30
				1995.06.02

###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약칭 “KIS”)라 한다.

제2조(목적) ①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신탁업
5. 투자일임업

## 6. 투자자문업

② 회사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금융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및 보험중개사의 업무
  2. 「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중개업무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6.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
  7.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8.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
  11.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12. 투자자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전문회사업무의 수탁업무
  14. 투자자계좌에 속한 증권·금전 등에 대한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
  15. 「상법」에 따른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16.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
  17.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18. 지급보증업무
  19.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20. 대출채권, 그 밖의 채권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21.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22. 금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
  23.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
  2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된 업무
  25. 기타 제1호 내지 제24호에 부수하는 업무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된 업무 이외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모두 영위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인가권자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신고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 등을 득하여 해당 업무를 영위한다.

제 3 조(본점의 소재지등)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사무소, 영업소, 출장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 5 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십육억주로 한다.

제 6 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는 설립 시에 일백만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8 조(주식의 종류와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8 조의 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①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으로 한다)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②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있어서 보통주식에 우선하는 주식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0.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 2 항의 배당을 한 후 잔여이익이 있을 때에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즉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분

은 다음 년도의 배당 시에 전보하지 아니한다.

- ⑤ 회사가 유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의 3(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②) ①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하는 상환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종류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발행가액, 상환시의 시가,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부가한 금액 중에서 종류주식의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종류주식의 상환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이 승인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한다. 다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상환기간 최종일 이전에 상환되지 않은 상환주식은 상환기간 최종일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 최종일에 상환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상환하는 날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⑥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⑦ 회사가 발행된 종류주식 중 일부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상환한다. 그 계산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⑧ 회사는 본 조의 종류주식을 제 8 조의 4에 의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⑨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⑩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 8 조의 2 제 2 항 내지 제 6 항을 준용한다.

제 8 조의 4(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③) ①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

라 한다)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주식과 동수로 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 8 조의 2 제 2 항 내지 제 6 항을 준용한다.

제 9 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제 3 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 1항 제 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 2 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제 1호, 제 2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는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의 범위 내에서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 8 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3년 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 한 경우.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사망,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1 조(신주의 배당기산일) ①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45 조 제 3 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

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2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기준일) ①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상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 2 장의 2 사 채

제 14 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발행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5 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9조 제 1항 제 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 9조 제 1항 제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 1항 제 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1 조를 준용한다.

제 16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 9 조 제 1 항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② 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조를 준용한다.

제 17 조(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8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2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3 장 주주총회

제 19 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주주총회는 회사가 정한 기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 또는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 수시 이를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의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 2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하지 못한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0 조(총회의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 시에는 제 31 조 제 5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1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2 조(총회의 결의) 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 23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주주총회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 조(총회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 4 장 이사 · 이사회

제 25 조(이사의 수) ① 회사는 3 명 이상의 이사를 둔다.

- ② 제 1 항의 이사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를 “기타비상무이사” 라 한다)를 포함한다.  
③ 사외이사는 3 인 이상으로 하되,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 26 조(선임방법)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제 39 조에 의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사외이사후보 추천 등)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사외이사의 선임, 임기, 평가 및 보상 등 사외이사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8 조(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1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② 사외이사는 회사에서 6년 이상,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 재임할 수 없으며, 동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 29 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제 25 조에서 정하는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사외이사의 사임, 해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관련 법규 및 「정관」 등에 규정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0 조(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퇴직금 포함)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퇴직금을 제외한 이사 보수의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의 퇴직금 지급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1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이 경우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받은자에 한한다.

② 이사회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등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④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⑥ 대표이사의 유고 시 그 직무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2 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 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 조, 제 397 조의 2 및 「상법」 제 39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 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5 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선임사외이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 36 조(이사회의 권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규정에 따른다.

1. 소집, 부의 등 주주총회 관련 사항
  2. 주식, 사채 발행 등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3. 타법인 출자 등 재산에 관한 사항
  4. 대표이사 선, 해임 등 지배구조 및 임원 관련 사항
  5. 예산, 결산 등 회사 경영관련 사항
- 5의 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인허가, 정관변경 등 기타 법령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②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0 조의 4에 따른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제 37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

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또한, 이사회에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8 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의 안전,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39 조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경영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
5. 보상위원회
6. 내부통제위원회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4 조 제 3 항, 제 35 조 및 제 37 조를 준용한다.

## 제 4 장의 2 감사위원회

제 40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0 제 2 항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0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이 조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의 위원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

분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⑧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⑨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1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7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42 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5 장 계 산

제 43 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4 조 (재무제표등)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 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4.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른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서류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 ② 감사위원회는 제 1 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 1 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④ 제 3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 3 항에 의한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6 조(손익계산과 처분) 회사의 손익계산은 매결산기의 총수익으로부터 총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순이익금으로 하고 이에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합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분의 1 이상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47 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 1 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기준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금전으로 이익(이를 “중간배당”이라 한다)을 배당할 수 있다.

⑤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된다.

## 제 6 장 보 칙

제 48 조(세칙내규) 회사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시행한다.

제 49 조(규정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와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

제 50 조(발기인) 회사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부 칙(1974.08.06)

이 정관은 회사가 설립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02.21)

이 정관은 197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04.30)

이 정관은 197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10.06)

이 정관은 197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01.27)

이 정관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07.12)

제 1 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197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제 21조제 2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하는 날로부터 선임된 이사와 감사에게 적용한다.

부 칙(1977.02.11)

이 정관은 197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7.25)

이 정관은 197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12.04)

이 정관은 197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2.14)

이 정관은 198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2.14)

이 정관은 198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12)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우선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은 변경 전에 발행된 우선주식이 그 존속 기간 (78.12.4 ~ 81.12.3) 중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일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으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당해 부족배당금에 대한 우선배당을 받을 권리 있는 그 존속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당해 부족액의 완금배당 시까지 존속한다.

제 3 조(사업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당 회사의 제9기 사업연도는 1982년 1월 1일부터 198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1984.08.20)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불구하고 주식의 병합을 할 때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② 제20조, 제23조제7항, 제24조, 제25조의2 및 제28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불구하고 「상법」부칙 제14조 및 제15조의 각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0.05.30)

이 정관은 199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6.30)

이 정관은 199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02)

이 정관은 199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31)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2조제1항, 제 14조제2항 단서, 제 16조, 제 18조, 제 19조제2항, 제 20조제2항, 제 23조의2, 제 24조, 제 25조제3항 및 제 4항, 제 25조의2, 제 30조제2항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 20조제2항은 1996년 10월 1일 이후 선임된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1997.10.14)

이 정관은 1997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6.03)

이 정관은 1998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6.18)

이 정관은 199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12)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제 8조제 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불구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이 지명되기 전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할 수 있다.

부 칙(1999.12.09)

이 정관은 199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5.25)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사외이사의 추천) 이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는 제 19조의 2에서 정한 추천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 3 조(감사의 상임이사 선임 시 임기) 이 정관 개정 당시 재임하고 있는 감사가 이 정관개정을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제 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임기간을 임기로 본다.

부 칙(2001.06.12)

이 정관은 2001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5.28)

이 정관은 200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03)

이 정관은 2003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6.08)

이 정관은 200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4.06)

이 정관은 200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19)

이 정관은 200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01)

이 정관은 200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29)

이 정관은 200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5.23)

이 정관은 200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14)

이 정관은 200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5.28)

이 정관은 200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5.27)

이 정관은 201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5.26)

이 정관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6.07)

이 정관은 201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3.20)

이 정관은 201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5.16)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단, 제 26조, 제 27조, 제 31조, 제 35조, 제 36조, 제 37조, 제 39조, 제 40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23)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21)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단, 제 8조, 제 12조, 제 17조, 제 18조 개정내용은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3.19)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24)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3.27)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 1조에도 불구하고 제 36조 제 2항의 개정규정은 회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3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최초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때부터 적용한다.

##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명칭의 대표자
대한증권(주)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64-5	김 선 필
한신증권(주)	" 명동 1가 5-1	이 세 명
중보증권(주)	" 남대문로 2가 4-3	김 당 도
동양증권(주)	" 명동 2가 2-10	김 종 수
생보증권(주)	" 명동 2가 1-3	이 완 희
태평증권(주)	" 명동 2 가 2-20	임 창 근
서울증권(주)	" 을지로 2가 199-68	이 순 구
한양증권(주)	" 을지로 2가 195-3	김 영 인
한일증권(주)	" 남대문로 2가 118	조 중 열
건설증권(주)	" 명동 1가 59-20	손 석 중
한보증권(주)	" 을지로 2가 18-2	이 예 철
부국증권(주)	" 을지로2가 199-45	김 정 출
대유증권(주)	" 명동 1가 59-12	김 희 관
동남증권(주)	" 명동 2가 50-15	김 용 관
국제증권(주)	" 명동 2가 59-1	김 계 흥
한흥증권(주)	" 을지로 2가 173	김 규 면
신흥증권(주)	" 을지로 2가 199-72	지 성 양
대아증권(주)	" 명동 1가 1-3	문 옥 주
동방증권(주)	" 명동 2가 50-14	임 재 동
국일증권(주)	" 을지로 2가 199-11	최 석 환
한광증권(주)	" 소곡동 65-1	조 동 환
일국증권(주)	" 을지로 2가 199-41	조 경 호
유화증권(주)	" 을지로 2가 199-63	송 영 균
효성증권(주)	" 소곡동 65-1	백 충 흄
동서증권(주)	" 명동 2가 51-11	김 창 순
삼보증권(주)	" 을지로 2가 199	강 성 진
산업증권(주)	" 을지로 2가 199	황 흥 주
신영증권(주)	" 을지로 2가 199	이 학 주
성도증권(주)	" 명동 1가 7	한 상 용

(訳文)

## 定 款 証 明 書

韓国投資証券株式會社（以下「当社」という。）の代表取締役兼最高経営責任者である私、金成煥（Kim, Sung Hwan）は、ここに、添付の書類が、現在において有効な当社の定款の真正、完全かつ正確な写し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

上記を証するため、私は 2025 年 6 月 23 日付で本書に押印した。

韓国投資証券株式會社

（代表者印）

金 成煥（Kim, Sung Hwan）

代表取締役兼最高経営責任者

## 韓国投資証券

### 定 款

			制定	1974. 08. 06	
改訂	2007. 05. 23	改訂	1996. 05. 31	改訂	1975. 02. 25
	2008. 11. 14		1997. 10. 14		1975. 05. 07
	2009. 05. 28		1998. 06. 03		1975. 10. 08
	2010. 05. 27		1999. 06. 18		1976. 04. 01
	2011. 05. 26		1999. 07. 12		1976. 07. 12
	2012. 06. 07		1999. 12. 09		1977. 03. 15
	2014. 03. 20		2000. 05. 25		1977. 07. 25
	2016. 05. 16		2001. 06. 12		1978. 12. 04
	2017. 03. 23		2002. 05. 28		1980. 02. 14
	2019. 03. 21		2003. 06. 03		1981. 02. 14
	2020. 03. 19		2004. 06. 08		1982. 02. 15
	2022. 03. 24		2005. 04. 06		1984. 09. 01
	2025. 03. 27		2005. 05. 19		1990. 05. 30
			2005. 06. 01		1992. 06. 30
			2005. 06. 28		1995. 06. 02

### 第1章 総則

#### 第1条(商号)

この会社は、韓国投資証券株式會社(以下「会社」という。)という。英文では、Korea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 (略称「KIS」)という。

#### 第2条(目的)

①会社は、「資本市場および金融投資業に関する法律」(以下「資本市場法」という。)に定める次の各号に掲げる金融投資業を営むことを目的とする。

1. 投資売買業
2. 投資仲介業
3. 集合投資業
4. 信託業
5. 投資一任業

## 6. 投資顧問業

②会社は、「資本市場法」および金融関連法令等に定める金融業務のうち、次の各号に掲げる業務を兼営する。

1. 「保険業法」に基づく保険代理店の業務および保険仲介会社の業務
  2. 「資本市場法」に基づく一般事務管理会社の業務
  3. 「外国為替取引法」に基づく外国為替業務に基づく電子資金振替業務
  5. 「労働者退職給与保障法」に基づく退職年金事業者の業務
  6. 「担保付社債信託法」に基づく担保付社債に関する信託業務
  7. 「不動産投資会社法」に基づく資産管理会社の業務
  8. 「産業発展法」に基づく企業構造調整専門会社の業務
  9. 「中小企業創業支援法」に基づく中小企業創業投資会社の業務
  10. 「与信専門金融業法」に基づく新技術事業金融業
  11. 国または公的機関の業務の代理
  12. 投資家の預託金で行う資金移動
  13. 「資産の流動化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資産管理者の業務と流動化専門会社の業務の受託業務
  14. 投資者の口座に属する証券・金銭等に対する第三者の担保権の管理
  15. 「商法」に基づく社債募集の受託業務
  16. 「資本市場法」に基づく企業金融業務、その他金融委員会が定め、告示する業務と連携した貸付業務
  17. 証券の貸借取引とその媒介・斡旋または代理業務
  18. 支払保証業務
  19. 韓国ウォンで表示された譲渡性預金証書の売買とその仲介・斡旋または代理業務
  20. 貸付債権その他の債権の売買とその媒介・斡旋または代理業務
  21. 貸付の媒介・斡旋または代理業務
  22. 地金の売買および仲介業務
  23. 「労働者退職金保障法」に基づく退職年金受給権を担保とした退職年金事業者としての貸付
  24. 総合金融投資事業者に許される業務
  25. その他第1号から第24号に付随する業務
- ③会社は、第1項および第2項に掲げる業務以外にも、関連法令等に基づいて営むことができる全ての業務を営むことができる。
- ④会社は、第1項から第3項の業務を遂行するために、関連法令等による認可権者の認可、許可、承認、登録または届出等が求められた場合には、当該認可等を得て当該業務を営むものとする。

第3条(本店の所在地等)

- ①会社は、本店をソウル特別市に置く。
- ②会社は、必要に応じて取締役会または取締役会から委任された委員会の決議により、国内外に支店、事務所、営業所、出張所および現地法人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 第4条(公告方法)

会社の公告は、会社のインターネットホームページ(securities.koreainvestment.com)に掲載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電算障害またはその他のやむをえない理由で会社のインターネットホームページに公告ができない時には、ソウル特別市で発行される「韓国経済新聞」および「毎日経済新聞」に掲載する。

### 第2章 株式および株券

#### 第5条(会社の発行する株式の総数)

会社の発行する株式の総数は、一十六億株とする。

#### 第6条(一株の金額)

会社の発行する株式1株の金額は、五千ウォンとする。

#### 第7条(会社の設立に際して発行する株式の総数)

会社は、設立時に、百万株の株式を発行するものとする。

#### 第8条(株式の種類ならびに株券および新株引受権証書に表示されるべき権利の電子登録)

- ①会社が発行する株式は、普通株式と記名式の種類株式とする。
- ②会社が発行する種類株式は、利益配当に係る優先株式、議決権の排除または制限に係る株式、償還株式、転換株式およびこれらの全部または一部を混合した株式とする。
- ③会社は株券および新株引受権証書を発行する代わりに、電子登録機関の電子登録口座簿に株式および新株引受権証書に表示されるべき権利を電子登録するものとする。

#### 第8の2(種類株式の数と内容①)

- ①会社が発行する1種種類株式は、無議決権配当優先株式(以下この条において「種類株式」とする。)とし、その発行株式の数は、発行株式総数の2分の1の範囲内とする。
- ②種類株式は、利益配当において普通株式に優先する株式であり、これに対しては額面金額を基準として年0.1%以上10%以内で発行時に取締役会が優先配当率を定める。
- ③種類株式について第2項の配当を行った後、残余利益があるときは、普通株式と同一の割合で直ちに参加させて配当する。
- ④種類株式について、ある事業年度において所定の配当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その不足分

は次年度の配当時に補てんしないものとする。

- ⑤会社が有償増資または株式配当を行う場合、種類株式への新株の割当では、有償増資および株式配当の場合には普通株式に割り当てる株式と同一の株式とし、無償増資の場合にはそれと同じ種類の株式とする。
- ⑥種類株式について所定の配当をしない旨の決議があった場合には、その決議があった総会の次の総会からその優先的配当をする旨の決議があった総会の終了までは、議決権があるものとする。

#### 第8の3(種類株式の数と内容②)

- ①会社が発行する2種種類株式は、無議決権配当優先株(以下この条において「種類株式」という。)とし、その発行株式の数は、発行株式総数の2分の1の範囲内とする。
- ②会社が種類株式を発行する場合、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会社またはその株主の選択により利益で消却する償還株式とすることができます。
- ③種類株式の償還価額は、額面価額、発行価額、償還時の時価、発行価額に市場金利を考慮して定めた利率により計算された金額を加算した金額の中から、種類株式の発行を決議する役員会が定める。この場合、取締役会で償還価額を調整できるという意、調整理由、調整の基準日および調整方法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④種類株式の償還期日は、発行日から1年以上10年以内の範囲で、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決定する。会社が償還株式を償還する場合は、定期株主総会で利益剰余金の処分計算書が承認された時から3カ月以内に償還する。ただし、会社は関連法令により種類株式の全部または一部を償還期日以前に償還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ことができます。
- ⑤償還期間の最終日以前に償還されなかった償還株式は、償還期間の最終日に償還されるものとする。ただし、償還期間の最終日に償還する利益がない場合には、実際に償還する日まで償還期間が延長される。
- ⑥会社は、償還対象株式の取得日の2週間前に、その旨をその株式の保有者および株主名簿に記載された権利者に通知または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⑦会社が発行された種類株式の一部のみを償還する場合には、法令上可能な範囲内で各株主が保有している種類株式の数に比例して償還する。その計算によって生じる端株は償還対象ではないとみなされる。
- ⑧会社は、この条の種類株式を第8条の4による転換株式として発行することができる。
- ⑨種類株式については、有償増資または無償増資を実施する場合にも、新株を割り当てないことができる。
- ⑩種類株式の発行に関しては、第8条の2第2項から第6項を準用する。

#### 第8の4(種類株式の数と内容③)

- ①会社が発行する3種種類株式は、普通株式に転換することができる権利を有する無議決権配

当優先転換株式(以下この条において「種類株式」という。)とし、その発行株式の数は、発行株式総数の2分の1の範囲内とする。

②転換により発行する株式の発行価額は転換前の株式の発行価額とし、転換により発行する株式の数は転換前の株式と同数とする。

③転換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は発行日から1年以上10年以内の範囲内で取締役会決議により定める。ただし、転換期期間内に転換権が行使されなければ転換期期間満了日に転換されたとみなされる。

④転換により発行される株式に対する利益の配当については、第11条の規定を準用する。

⑤種類株式の発行に関しては、第8条の2第2項から第6項を準用する。

#### 第9条(株式の発行および割当て)

①会社が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新株(第3号の場合にあっては、既に発行した株式を含む。)を発行する場合は、次の各号に掲げる方式によるものとする。

1. 株主に対し、その有する株式の数に応じて新株を割り当てるため、新株引受権の申込みをする機会を与える方式

2. 発行株式総数の100分の50を超えない範囲内で、新技術の導入、財務構造の改善等会社の経営上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必要な場合、第1号以外の方法により特定の者(会社の株式を所有する者を含む。)に新株を割り当てるための新株引受けの申込みをする機会を与える方法  
3. 発行株式総数の100分の50を超えない範囲内で、第1号以外の方法により、不特定多数の者(会社の株式を所有する者を含む。)に対して新株引受権を行使する機会を付与し、これにより、申込をした者に対して新株を割り当てる方式

②第1項第3号の方式で新株を割り当てる場合に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方式で新株を割り当てなければならない。

1. 新株引受権の申込機会を付与する者の類型を分類せず、不特定多数の申込人に新株を配分する方式

2. 関係法令に従い、当社株主組合員に対して新株を割り当て、申請されていない株式まで含め、不特定多数人に対して新株買受の申請をする機会を与える方式

3. 株主に対して優先的に新株割り当ての申請をする機会を付与し、申請されない株式がある場合、これを不特定多数人に新株を割り当てられる機会を付与する方式

4. 投資売買業者または投資仲介業者が引受人または斡旋人として設けた需要予測等関係法令に定める合理的な基準に基づき、特定の類型の者に新株引受権の申込みをする機会を与える方式

③第2項により株主以外の者に新株を割り当てる場合、「商法」第416条第1号、第2号、第2号の2、第3号および第4号に定める事項をその払込期日の2週間前までに株主に通知し、または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第1項各号のいずれかの方式により新株を発行する場合には、発行する株式の種類と数およ

び発行価格等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定める。

- ⑤会社は新株を割り当てる場合、その期日までに新株引受権の申込みをしないか、またはその価額の払込みのない株式が発生した場合には、その処理方法は、発行価額の適正性等関連法令で定めるところに従い、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定める。
- ⑥会社は、新株を割り当てる際に発生する新株に対する処理方法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定めるものとする。
- ⑦会社は、第1項第1号により新株を発行する場合には、株主に対して新株引受権証書を発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10条(株式買取選択権)

- ①会社は、役職員に対し、発行株式総数の100分の10の範囲内で「商法」の規定による株式買取選択権を株主総会の特別決議によって付与することができる。
- ②株式買取選択権を付与される者は会社の設立・経営と技術革新などに寄与したか、または寄与できる役職員とし、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除く。
  - 1. 議決権のない株式を除く発行済株式総数の100分の10以上の株式を有する株主
  - 2. 役員の選任や解任など、会社の主要な経営事項に対して実質的な影響力行使する者
  - 3. 第1号および第2号に規定する者の配偶者および直系尊属・卑属
- ③株式買取選択権の行使として交付する株式(株式買取選択権の行使価格と時価との差額を現金または自己株式で交付す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差額の算定の基準となる株式をいう。)は、第8条の株式のうち株式買取選択権を付与する株主総会また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定める。
- ④株式買取選択権は、第1項の決議の日から3年を経過した日から7年以内にこれ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株式買取選択権を与えられた者は、法令で定める場合を除き、第1項の決議の日から2年以上在任または在職しなければ、これ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
- ⑤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株式買取選択権の付与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 1. 当該役職員が株式買取選択権を付与された後、3年以内に任意に退任または退職した場合。ただし、株式買取選択権を付与された者が死亡、定年による退任または退職、その他本人の帰責事由でない事由により退任または退職する場合として、取締役会が認める場合は例外とする。
  - 2. 当該役職員が故意または過失により会社に重大な損害をもたらした場合
  - 3. その他株式買取選択権の付与契約に定める取消事由が発生した場合

#### 第11条(新株の配当起算日)

- ①会社が有償増資、無償増資および株式配当により新株を発行する場合、新株に対する収益の配当に関しては、新株を発行した時の属する事業年度の直前事業年度末に発行されたものとみなす。
- ②第1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45条第3項の中間配当基準日以後に有償増資、無償増資およ

び株式配当により発行された株式に対する中間配当に関しては、中間配当基準日の直後に行われたものとみなす。

#### 第 12 条(名義書換代理人)

- ①会社は、株式の名義書換代理人を置く。
- ②名義書換代理人およびその事務取扱場所と代行業務の範囲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定める。
- ③会社は、株主名簿またはその複製を名義書換代理人の事務取扱場所に備え付け、株式の電子登録、株主名簿の管理、その他株式に関する事務は名義書換代理人に取り扱わせるものとする。
- ④第 3 項の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手続は、名義書換代理人の証券の名義書換代行等に関する規定による。

#### 第 13 条(基準日)

- ①会社は、臨時株主総会の招集その他必要な場合に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定める日に、株主名簿に記載されている株式をその権利を行使する株式とすることができます。会社は、これを 2 週間前に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株主全員の同意があるときは、上記公告手続き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 第 2 章の 2 社債

#### 第 14 条(社債の発行)

- ①会社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社債を発行することができる。
- ②取締役会は代表取締役に対し、社債の発行金額および種類を定め、1 年を超えない期間内に社債を発行することを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 第 15 条(転換社債の発行および割当て)

- ①会社は、社債の額面総額が一兆五千億ウォンを超えない範囲内で、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株主以外の者に転換社債を発行することができる。
  1. 新技術の導入、財務構造の改善等会社の経営上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必要な場合第 9 条第 1 項第 1 号以外の方法により特定の者(会社の株式を所有する者を含む。)に社債を割り当てるため社債の引受けの申込みをする機会を与える方法により転換社債を発行する場合
  2. 第 9 条第 1 項第 1 号以外の方法により、特定多数人(会社の株式を所有する者を含む。)に対して社債の引受けの申込みをする機会を与え、これに伴い、その申込みをした者に対して社債を割り当てる方式で転換社債を発行する場合
- ②第 1 項第 2 号の方法により社債を割り当てる場合に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方法により社債を割り当てなければならない。
  1. 社債の引受けの申込みをする機会を与える者の類型を分類せず、不特定多数の申込者に社債

## を割り当てる方式

2. 株主に対して優先的に社債の引受けの申込みをする機会を与える、かつ、申込みをされていない社債がある場合には、これを不特定多数人に対して社債の割当てを受ける機会を与える方式
  3. 投資売買業者または投資仲介業者が引受人または斡旋人として設けた需要予測等関係法令に定める合理的な基準に基づき、特定の類型の者に社債の引受けの申込みをする機会を与える方式
- ③取締役会は、第1項の転換社債について、その一部に対してのみ転換権を付与することを条件として、これを発行することができる。
- ④転換により発行する株式は普通株式または種類株式とし、転換価格は株式の額面金額またはそれ以上の価額で社債発行時に取締役会が定める。
- ⑤転換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は、当該社債の発行日後1月が経過した日からその償還期日の直前の日までとする。ただし、上記期間内において、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転換請求期間を調整することができる。
- ⑥転換により発行される株式への利益の配当および転換社債への利息の支払いに関しては、第11条を準用する。

## 第16条(新株引受権付社債の発行および配分)

- ①会社は、社債の額面総額が1兆5000億ウォンを超えない範囲内で、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株主以外の者に新株引受権付社債を発行することができる。
1. 新技術の導入、財務構造の改善等会社の経営上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必要な場合第9条第1項第1号以外の方法により特定の者(会社の株式を所有する者を含む。)に社債を割り当てるため社債の引受けの申込みをする機会を与える方法により新株引受権付社債を発行する場合
  2. 第9条第1項1号以外の方法により、不特定多数人(会社の株式を所有する者を含む。)に対して社債の引受けの申込みをする機会を与え、これに伴い申込みをした者に対して社債を配分する方式で新株引受権付社債を発行する場合
- ②第1項第2号の方法により社債を割り当てる場合には、定款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方法により社債を割り当てなければならない。
1. 社債の引受けの申込みをする機会を与える者の類型を分類せず、不特定多数の申込者に社債を割り当てる方式
  2. 株主に対して優先的に社債の引受けの申込みをする機会を与える、かつ、申込みをされていない社債がある場合には、これを不特定多数人に対して社債の割当てを受ける機会を与える方式
  3. 投資売買業者または投資仲介業者が引取人または斡旋人として設けた予測等関係法令で定める合理的な基準に基づき、特定の類型の者に社債の引受けの申込みをする機会を与える方式
- ③新株引受権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金額は、社債の額面総額を超えない範囲内で取締役会が定める。

- ④新株引受権の行使として発行される株式は普通株式または種類株式とし、その発行価額は額面金額またはそれ以上の価額で社債発行時に取締役会が定める。
- ⑤新株引受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は、当該社債発行日後 1 カ月を経過した日からその償還期日の直前の日までとする。ただし、上記期間内であれば、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新株引受権の行使期間を調整することができる。
- ⑥新株引受権の行使により発行される株式に対する利益の配当については、第 11 条を準用する。

#### 第 17 条(社債および新株引受権証券に表示されるべき権利の電子登録)

会社は、社債および新株引受権証券を発行するのと引換えに、社債および新株引受権証券に表示されるべき権利を電子登録機関の電子登録口座簿に電子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 18 条(社債の発行に関する準用規定)

第 12 条の規定は、社債を発行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 第 3 章 株主総会

#### 第 19 条(総会の招集)

- ①定時株主総会は、会社の定める基準日から 3 カ月以内に招集し、臨時株主総会は、必要に応じて取締役会の決議または法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隨時これを招集する。
- ②株主総会を招集するには、その日時、場所および会議の目的事項を、総会日の 2 週間前に書面または電子文書により各株主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通知が株主名簿上の株主の住所に引き続き 3 年間到達しないときは、当該株主に株主総会の招集を通知しないことができる。
- ③第 2 項本文にも関わらず、株主全員の同意がある場合には、通知期間を短縮したり、通知手続き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 ④株主総会は、あらかじめ株主に通知した会議の目的事項以外は決議しないものとする。ただし、株主全員の同意があ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はない。

#### 第 20 条(総会の議長)

総会の議長は、取締役社長とする。ただし、取締役社長の告知の際には、第 31 条第 5 項の規定を準用する。

#### 第 21 条(議長の秩序維持権)

- ①株主総会の議長は、故意に議事の進行を妨害するための発言・行動をするなど著しく秩序を乱す者に対して、その発言の停止または退場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②株主総会の議長は、議事進行の円滑を期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株主の発言の時

間および回数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

#### 第 22 条(総会の決議)

総会の決議は、法令に別段の定めがあるものを除き、出席した株主の議決権の過半数と発行株式の総数の四分の一以上の数をもっ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 23 条(議決権の代理行使)

株主は、代理人に議決権を行使させ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代理人は、株主総会の前にその代理権を証明する書面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 24 条(総会の議事録)

株主総会の議事については、その経過の要領および結果を議事録に記載し、議長と出席した取締役が記名押印または署名して、本店および支店に備え付けなければならない。

### 第 4 章 取締役・取締役会

#### 第 25 条(取締役の数)

- ①会社は、3人以上の取締役を置く。
- ②第1項の取締役には、社内取締役、社外社長、その他通常業務に従事しない取締役(「他の非業務執行取締役」という。)が含まれる。
- ③社外取締役は3人以上とし、全体取締役数の過半数以上でなければならない。

#### 第 26 条(選任方法)

- ①取締役は、株主総会において選任する。ただし、社外取締役は第39条による役員候補推薦委員会の推薦を受けて株主総会で選任する。
- ②2人以上の取締役を選任する場合にも、「商法」第382条の2に規定する集中投票制を適用しない。

#### 第 27(社外取締役候補推薦等)

- ①役員候補推薦委員会は、「資本市場法」等の関連法令で定める資格を有する者の中から社外取締役候補を推薦する。
- ②社外取締役の選任、任期、評価および報酬など、社外取締役の運営に関する細部事項は、取締役会で定めるところによる。

#### 第 28 条(任期)

- ①取締役の任期は、就任後1年以内の最終の決算期に関する定期株主総会の終結時までとし、再

任されることができる。

- ②社外取締役は、会社で 6 年以上、系列会社で社外取締役として在職した期間を合算して 9 年以上在任することができず、同期間を超過しても任期中の最終の決算期に関する定期株主総会の終結時まで任期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 第 29 条(取締役の補選)

- ①取締役のうち欠員が生じたときは、株主総会でこれを選任する。ただし、第 25 条で定める人數を議決せず、業務遂行上支障がない場合にはこの限りではない。
- ②補欠として選任された取締役の任期は、前任者の残りの任期とする。
- ③社外取締役の辞任、解任または死亡等の事由により、関連法令および「定款」等に規定された人數を決議できない場合には、その事由が発生した日以後最初に招集される株主総会でその要件に合致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 30 条(報酬および退職金)

- ①取締役の報酬(退職金を含む。)の限度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り定める。
- ②退職金を除く取締役の報酬の具体的な支払い方法は、取締役会の決定に従う。
- ③取締役の役員退職慰労金の支給方法は、取締役会で定める「退職金支給規程」に定めるものとする。

#### 第 31 条(代表取締役等の選任)

- ①会社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代表取締役を選任する。この場合、複数人の代表取締役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代表取締役は役員候補推薦委員会で推薦された者に限る。
- ②取締役会は、業務上の必要に応じ、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会長、副会長、社長、副社長、専務取締役、常務取締役若干名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 ③会社は戦略企画、財務管理、リスク管理など主要業務を執行する主要業務執行責任者を取締役会の議決を経て任免する。
- ④代表取締役は会社を代表し、全体業務を総括する。
- ⑤副社長、専務取締役、社長および取締役は、代表取締役を補佐し、取締役会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会社の職務を執行する。
- ⑥代表取締役の職務は、取締役会が決定する。

#### 第 32 条(取締役の報告義務)

取締役は、会社に著しく損害を及ぼすおそれのある事実を発見したときは、直ちに監査委員会にこれを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 33 条(取締役の会社に対する責任の軽減)

- ①会社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り、取締役の「商法」第399条に基づく責任を、その行為をした日以前の直近1年間の報酬額(賞与と株式買取選択権の行使による利益等を含む)の6倍(社外取締役の場合は3倍)を超える金額に対して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 ②取締役が故意または重大な過失により損害を発生させた場合ならびに取締役が「商法」第397条、第397条の2および「商法」第398条に該当する場合には、第1項の規定を適用しないものとする。

#### 第34条(取締役会の構成および招集)

- ①取締役会は、取締役をもって構成し、会社の業務執行に関する重要事項を決議する。ただし、取締役会は委員会を設置してその権限の一部を委任し処理するようにすることができる。
- ②取締役会は、各取締役が招集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招集する取締役を定めた場合には、その取締役が招集するものとする。
- ③取締役会の招集は、その日の1日前に各取締役に通知を送付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取締役および監査役全員の同意がある場合は、招集手続き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 第35条(取締役会議長)

- ①取締役会は、毎年、取締役会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社外取締役の中から取締役会議長を選任する。
- ②第1項にかかわらず、取締役会が社外取締役でない者を取締役会議長に選任する場合、取締役会はその理由を公示し、社外取締役を代表する選任社外取締役を別途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第2項の選任社外取締役の職務は、次の各号に掲げる業務を行うものとする。
1. 社外役員全員で構成される社外役員会議の招集および主宰
  2. 社外取締役の効率的な業務遂行を支援
  3. 社外取締役の責任性向上のための支援

#### 第36条(取締役会の権限)

- ①次の各号に掲げる事項は、取締役会の審議・議決を経なければならず、その詳細は、取締役会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1. 招集、付議等の株主総会関連事項
  2. 株式、社債の発行等資本金および株式に関する事項
  3. 他法人出資等財産に関する事項
  4. 代表取締役の選任、解任など支配構造および役員関連事項
  5. 予算、決算など、会社の経営に関する事項
- 5の2. 内部統制およびリスク管理政策の樹立ならびに監督に関する事項
6. 許認可、定款変更等その他の法令で取締役会の審議・議決事項として定めた事項
- ②取締役会は、「金融会社の支配構造に関する法律」第30条の4に従い代表取締役の内部統制等

の総括管理義務の履行を監督する。

#### 第37条(取締役会の決議方法)

- ①取締役会の決議は、取締役の過半数の出席と出席取締役の過半数をもって行わなければならぬ。ただし、「商法」第397条の2および第398条に該当する事項についての取締役会の決議は、取締役の3分の2以上の数とする。また、取締役会の決議に関して特別な利害関係のある者は、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
- ②取締役会は、取締役の全部または一部が直接会議に出席せず、すべての取締役が音声を同時に送受信する通信手段によって決議に参加すること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当該取締役は取締役会に直接出席したものとみなされるものとする。

#### 第38条(取締役会議事録)

取締役会の議事については、議事の案件、経過要領、その結果、反対する者とその反対理由を議事録に記載し、出席した取締役が記名押印または署名して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 第39条(委員会)

- ①会社は、取締役会内に次の各号に掲げる委員会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1. 役員候補推薦委員会
  2. 監査委員会
  3. 経営委員会
  4. リスク管理委員会
  5. 報酬委員会
  6. 内部統制委員会
  7. 取締役会が必要と認めるその他の委員会
- ②各委員会の構成、権限、運営等に関する細部事項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定める。
- ③委員会に関しては、第34条第3項、第35条および第37条を準用する。

### 第4章の2 監査委員会

#### 第40条(監査委員会の構成)

- ①会社は、監査役に代えて、第39条の規定による監査委員会を置く。
- ②監査委員会は3人以上の取締役で構成する。
- ③委員の3分の2以上は社外取締役でなければならず、社外取締役でない委員は「商法」第542条の10第2項および「金融会社支配構造に関する法律」第19条第10項の要件を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
- ④監査委員会は、その決議により委員会を代表する者を選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⑤監査委員会委員の辞任または死亡などの事由により、監査委員会の構成がこの条に規定された要件に合致しなくなった場合には、当該事由が発生した日以後に最初に招集される株主総会で、監査委員会の構成が合致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⑥監査委員会の委員候補は、役員候補推薦委員会が推薦する。  
この場合、委員総数の3分2以上の賛成で議決する。
- ⑦会社は監査委員となる社外取締役1人以上については他の取締役と分離して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⑧監査委員の選任には、議決権のある発行済株式の総数の100分の3を超える数の株を必要とする。株式を有する株主は、その超過する株式については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
- ⑨監査委員会委員を選任し、または解任するときは、議決権を行使する最大株主とその特殊関係人、最大株主またはその特殊関係人の計算で株式を保有する者、最大株主またはその特殊関係人に議決権を委任した者が所有する議決権のある株式の合計が、議決権のある発行株式の総数の100分の3を超える場合、その株主は、その超える株式に関し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

#### 第41条(監査委員会の職務)

- ①監査委員会は、会社の会計と業務を監査する。
- ②監査委員会は、必要に応じて、会議の目的および招集理由を記載した書面を取締役会招集権者に提出することにより、取締役会の招集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③ 第2項の請求が行われたにもかかわらず、取締役会招集者が遅滞なく取締役会を招集しない場合は、監査委員会が取締役会を招集することができる。
- ④監査委員会は、取締役が株主総会に提出する議案および書類を調査し、法令または「定款」に違反しているか、または著しく不当な事項があるか否かについて、株主総会においてその意見を述べなければならない。
- ⑤ 監査委員会は、会議の目的および招集の理由を記載した書面を取締役会に提出することにより、臨時総会の招集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⑥監査委員会は、その職務を遂行するために必要なときは、子会社に対して営業の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子会社が遅滞なく報告をしないとき、またはその報告の内容を確認する必要があるときは、子会社の業務と財産の状態を調査することができる。
- ⑦監査委員会は会社の外部監査人を選定する。
- ⑧監査委員会は、第1項から第7項に加えて、取締役会から委任された事項を処理する。

#### 第42条(監査調書)

監査委員会は、監査に関して監査調書を作成し、監査の実施要領とその結果を記載し、監査を実施した監査委員会委員が記名押印または署名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5章 計算

### 第43(事業年度)

会社の事業年度は、毎年1月1日から12月31日までとする。

### 第44条(財務諸表等)

①代表取締役は、定時株主総会の日の6週間前に、次の各号に掲げる書類並びにその附属明細書および事業報告書を作成し、監査委員会の監査を受けて、定時株主総会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貸借対照表(株式会社の外部監査に関する法律第2条の二に規定する財務状態表)
  2. 損益計算書
  3. その他会社の財務状態や経営成果を表示するものとして「商法」施行令で定める書類
  4. 「商法」施行令で定める第1号から第3号の書類に対する連結財務諸表
- ②監査委員会は、第1項の書類を受け取った日から4週間以内に、監査報告書を代表取締役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第1項にかかわらず、会社は、次の各号のすべての要件を満たす場合に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これを承認することができる。
1. 第1項の各書類が法令および定款に従い、会社の財務状態および経営成果を適正に表示しているという外部監査人の意見があるとき。
  2. 監査委員全員の同意があるとき
- ④第3項により取締役会が承認した場合には、代表取締役は、第1項の各書類の内容を株主総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⑤会社は、第1項各号に掲げる書類を営業報告書および監査報告書とともに、定時株主総会の日の1週間前から本店に5年間、その謄本を支店に3年間備え付けなければならない。
- ⑥会社は、第1項各号の書類に対する定期株主総会の承認または第3項による取締役会の承認を得たときは、遅滞なく貸借対照表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45条(外部監査人の選任)

会社は、監査委員会が選定した外部監査人を選任し、選任後最短で招集される定期株主総会にその事実を報告するか、または「株式会社等の外部監査に関する法律施行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株主に通知または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46条(損益の計算と処分)

会社の損益の計算は、毎決算期の総収益から総費用を控除した残りを純利益金とし、これに前期繰越利益剰余金を合わせて次の各号の方法により処分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利益準備金:金銭による利益配当額の10分の1以上

2. その他の法定準備金
3. 配当金
4. 任意積立金
5. その他の利益剰余金の処分
6. 次期繰越利益剰余金

#### 第 47 条(利益配当)

- ①利益の配当は、金銭および株式その他の財産により行うことができる。ただし、株式による配当は、利益配当総額の二分の一に相当する金額を超えないものとする。
- ②利益の配当を株式で行う場合、会社が種類株式を発行した時に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りそれと異なる種類の株式でも行うことができる。
- ③第 1 項の配当は、毎決算期末現在の株主名簿に記載された株主または登録された質権者に対して支払われるものとし、定時株主総会の承認があった日から 1 カ月以内に支払われるものとする。ただし、定時株主総会が配当の支払いの時期を別途定めた場合は、この限りではない。
- ④会社は、事業年度中 1 回に限り、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一定の基準日を定め、その基準日現在の株主名簿に記載された株主または登録された質権者に対し、金銭による差益(これを「中間配当」という。)を配当することができる。
- ⑤配当支払請求権は 5 年間行使しなければ、消滅時効が完成し、その配当は会社に帰属する。

## 第 6 章 補則

#### 第 48 条(細則内規)

会社の業務推進と経営のために必要な規定は、取締役会で決定・施行する。

#### 第 49 条(規定外事項)

この「定款」に定めのない事項は、株主総会の決議と「商法」その他の法令に従うものとする。

#### 第 50 条(発起人)

会社設立発起人の氏名、住所は、この「定款」の末尾に記載するとおりである。

#### 附則(1974. 08. 06)

この定款は、会社が設立した日から施行する。

#### 附則(1975. 02. 21)

この定款は 1975 年 2 月 25 日から施行する。

附則(1975. 04. 30)

この定款は 1975 年 5 月 7 日から施行する。

附則(1975. 10. 06)

この定款は 1975 年 10 月 8 日から施行する。

附則(1976. 01. 27)

この定款は 1976 年 4 月 1 日から施行する。

附則(1976. 07. 12)

第 1 条(施行日)

この定款は、1976 年 7 月 12 日から施行する。

第 2 条(経過措置)

第 21 条第 2 項の規定は、この定款の施行の日から選任された取締役および監査役について適用する。

附則(1977. 02. 11)

この定款は 1977 年 3 月 15 日から施行する。

附則(1977. 07. 25)

この定款は 1977 年 7 月 25 日から施行する。

附則(1978. 12. 04)

この定款は 1978 年 12 月 4 日から施行する。

附則(1980. 02. 14)

この定款は 1980 年 2 月 14 日から施行する。

附則(1981. 02. 14)

この定款は 1981 年 2 月 14 日から施行する。

附則(1982. 02. 12)

第 1 条(施行日)

この定款は、1982 年 2 月 15 日から施行する。

第 2 条(優先株式に関する経過措置)

この定款は、変更前に発行された優先株式が、その存続期間(78. 12. 4～81. 12. 3)中の毎事業年

度決算日現在の 1 年満期定期預金利水準の配当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当該不足配当金に対する優先配当を受ける権利は、その存続期間の満了にもかかわらず、当該不足額の完全配当時まで存続するものとする。

第3条(事業年度に係る経過措置)

当会社の第9期事業年度は、1982年1月1日から1982年3月31日までとする。

附則(1984. 08. 20)

第1条(施行日)

この定款は、1984年9月1日から施行する。

第2条(経過措置)

①第5条および第6条に規定する事項に関しては、定款の変更にかかわらず、株式の併合をする時までは従前の規定による。

②第20条、第23条7項、第24条、第25条の2および第28条に規定する事項に関しては、定款の変更にかかわらず、「商法」附則第14条および第15条の各規定による。

附則(1990. 05. 30)

この定款は1990年5月30日から施行する。

附則(1992. 06. 30)

この定款は1992年6月30日から施行する。

附則(1995. 06. 02)

この定款は1995年6月2日から施行する。

附則(1996. 05. 31)

第1条(施行日)

この定款は、1996年5月31日から施行する。

ただし、第12条1項、第14条2項ただし書、第16条、第18条、第19条2項、第20条2項、第23条の2、第24条、第25条3項および第4項、第25条の2、第30条2項は、1996年10月1日から施行する。

第2条(監査役の任期についての経過措置)

第20条2項は、1996年10月1日以降に選任された監査役について適用する。

附則(1997. 10. 14)

この定款は1997年10月14日から施行する。

附則(1998. 06. 03)

この定款は 1998 年 6 月 3 日から施行する。

附則(1999. 06. 18)

この定款は 1999 年 6 月 18 日から施行する。

附則(1999. 07. 12)

第 1 条(施行日)

この定款は、1999 年 7 月 12 日から施行する。

第 2 条(経過措置)

第 8 条第 2 項に規定する事項に関しては、定款の変更にかかわらず、名義書換代理人が指名されるまでは、従前の規定によることができる。

附則(1999. 12. 09)

この定款は 1999 年 12 月 9 日から施行する。

附則(2000. 05. 25)

第 1 条(施行日)

この定款は、2000 年 5 月 25 日から施行する。

第 2 条(社外取締役の推薦)

この定款によって最初に選任される社外取締役は、第 19 条の 2 で定めた推薦手続きを経たものとみなす。

第 3 条(監査役の常任取締役選任時の任期)

が定款改正当時在任している監査役が、この定款改正を決議する株主総会において常任取締役に選任される場合には、第 20 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残余期間を任期とみなす。

附則(2001. 06. 12)

この定款は 2001 年 6 月 12 日から施行する。

附則(2002. 05. 28)

この定款は 2002 年 5 月 28 日から施行する。

附則(2003. 06. 03)

この定款は 2003 年 6 月 3 日から施行する。

附則(2004. 06. 08)

この定款は2004年6月8日から施行する。

附則(2005.04.06)

この定款は2005年4月6日から施行する。

附則(2005.05.19)

この定款は2005年5月19日から施行する。

附則(2005.06.01)

この定款は2005年5月19日から施行する。

附則(2005.06.29)

この定款は2005年6月29日から施行する。

附則(2007.05.23)

この定款は2007年5月23日から施行する。

附則(2008.11.14)

この定款は2008年11月14日から施行する。

附則(2009.05.28)

この定款は2009年5月28日から施行する。

附則(2010.05.27)

この定款は2010年5月27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4条は2010年5月29日から施行する。

附則(2011.05.26)

この定款は2011年5月26日から施行する。

附則(2012.06.07)

この定款は2012年6月7日から施行する。

ただし、第41条は2013年1月1日以後に開始する事業年度から施行する。

附則(2014.03.20)

この定款は2014年3月20日から施行する。

附則(2016. 05. 16)

第1条(施行日)

この定款は、2016年5月16日から施行する。

第2条(経過措置)

ただし、第26条、第27条、第31条、第35条、第36条、第37条、第39条および第40条は、「金融会社の支配構造に関する法律」が施行される2016年8月1日から施行する。

附則(2017. 03. 23)

第1条(施行日)

この定款は、2017年3月23日から施行する。

附則(2019. 03. 21)

第1条(施行日)

この定款は、2019年3月21日から施行する。

第2条(経過措置)

ただし、第8条、第12条、第17条、第18条の改正内容は、「株式・社債等の電子登録に関する法律」が施行される2019年9月16日から施行する。

附則(2020. 03. 19)

第1条(施行日)

この定款は、2020年3月19日から施行する。

附則(2022. 03. 24)

第1条(施行日)

この定款は、2022年3月24日から施行する。

附則(2025. 03. 27)

第1条(施行日)

この定款は、2025年3月27日から施行する。

第2条(取締役会の権限に対する経過措置)

第1条にもかかわらず、第36条第2項の改正規定は、会社が「金融会社の支配構造に関する法律」第30条の3による責任構造図を初めて作成し、金融委員会に提出した時から適用する。

発起人の氏名および住所

(省略)